

제29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10. 2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2023년 10월 24일  
전문위원 권 오 숙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3 - 106
- 나. 제출자: 강서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3년 10월 12일
- 라. 회부일자: 2023년 10월 16일

### 2.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의료급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맞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2023년 12월 31일) 도래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주체 명시 (안 제1조, 안 제2조)
- 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규정 (안 제3조, 안 제4조)
- 다. 납입의 고지에 관해 규정 (안 제5조)

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안 제6조)

마. 상위법령과 불일치·중복 규정 삭제 (현행 제4조~제7조 및 제9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9조

2) 「의료급여법」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3)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4)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3. 9. 1. ~ 9. 21.) 결과: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기획예산과):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가족정책과): 해당 없음

## 5. 검토의견

가. 개정취지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비하여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나. 주요 개정내용

-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였는데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sup>1)</sup>에 따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주체를 강서구청장으로 명시하고
  -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의료급여법」<sup>2)</sup>에 따른 세입과 세출의 세부 항목 규정을 신설하고
  - 안 제5조에서는 납입의 고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음
  - 또한 상위법령에 불일치 하는 규정[현행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및 중복 규정[현행 제9조(결손처분), 제9조의2(보고 등)]을 삭제하여 법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2023년 12월 31일)가 도래하여, 「지방재정법」<sup>3)</sup>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5년 더 연장하였음

---

1) 제28조(기금의 관리 · 운용)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시 · 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 · 운용하여야 한다.

2)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② 기금은 급여비용, 대지급에 드는 비용, 제3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드는 비용 또는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3) 제9조(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종합의견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적정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건강생활유지비<sup>4)</sup>, 요양비<sup>5)</sup>, 장애인 보조기기<sup>6)</sup>, 임신·출산 진료비<sup>7)</sup> 등 의료급여비의 지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
-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존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2023. 8. 30.)를 거치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또한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 적합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됨

---

4) 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1인당 매월 6천원씩 지원 (급여일수의 실시간 관리를 통해 여러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중복투약 예방)

5) 요양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요양비로 지급 (자동복막투석, 당뇨, 자가도뇨, 기침유발기 등 소모성 재료비 지원)

6) 장애인보조기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의지·보조기, 수동·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의 일부를 지원

7) 임신·출산 진료비: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임산부 및 출생 후 2세 미만인 자녀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지원)

## □ 「지방재정법」

-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의료급여법」

- 제21조(대지급금의 상환) ① 제20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 ② 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대지급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상환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제13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여 의료급여를 받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의료급여가 실시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기관 또는 제13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하는 자와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공모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또는 제13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의료급여기관과 연대하여 제1항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2.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로부터 급여비용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해당 급여비용을 징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가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독촉을 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부당이득금 납부의무자는 그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이전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⑩ 제9항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납부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6.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제1호의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기금은 급여비용, 대지급에 드는 비용, 제3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드는 비용 또는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치
2. 국채·공채의 매입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 시·도지사는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금을 교부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운용상 증감조정이 필요한 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로부터 교부받은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지급금의 상환, 부당이득금의 징수 등으로 교부받은 기금이 소요비용을 초과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계정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

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시·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의료급여비용심사위탁수수료, 수급권자전산관리위탁수수료, 급여비용지급위탁수수료 및 의료급여의 적정성평가 위탁수수료 등 소요비용을 의료급여기금계정에 계상하여야 한다.

⑦ 법 제26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비용
2. 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3. 수당·일용잡급·국내여비·교육비·수용비·수수료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물품구입비(이하 “행정경비”라 한다). 이 경우 행정경비는 당해연도 기금지출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⑧ 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금계정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⑨ 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법·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